



의안번호	제호
------	----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9. 11. 15.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호
----------	----

제출연월일 : 2019. 11. 1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상 흠결을 개선 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실공사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 나.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신설함. (안 제13조)
- 다. 종전의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20조)
- 라. 위원회 결정결과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합 의 : 청렴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19. 10. 10. ~ 2019. 10. 3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22조, 제9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 처리현황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신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와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관리와 우선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안전사고 예방, 민원 접수·처리 등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 공사는 그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 등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복도시국장, 희망마을건설과장, 건설업무와 관련된 논산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명 이상)

2.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나.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다.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같은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2호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2. 논산시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설공사
3. 논산시의회의 요구가 있는 공사

② 기타 건설공사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의 주요부실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간사(담당주사)와 서기(담당) 각 1명을 둔다.

제20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결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희망마을건설 과 장	박 찬 택
	건설정책팀장	박 광 용
	담 당 자	이 덕 선 (746-6172)

부실공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위치	
	공 종		발 생 일	년 월 일
부실시공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p>「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논산시장 귀하</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 (생 략)</u> <u><신 설></u></p>	<p><u>제22조 (현행 제9조와 같음)</u> <u>제10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u></p> <p>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센터의 장은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p>
<p><u>제10조 (생 략)</u> <u><신 설></u></p>	<p><u>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u> <u>제11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u></p> <p>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p> <p>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p>

<신 설>

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 한다.

④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 처리현황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신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와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관리와 우선 보수, 보강 등

<신 설>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안전사고 예방, 민원 접수·처리 등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실 측정 대상 공사는 그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측정을 한

<신 설>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 내용 및 시정조치 등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 구성)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복도시국장, 희망마을건설과장, 건설업무와 관련된 논산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명 이상)

2.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 가.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 나.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 다.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같은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라.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마.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에 있는 사람
- 바.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 2호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신 설>

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
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
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대상)① 5
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2. 논산시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설공사

3. 논산시의회의 요구가 있는 공사

② 기타 건설공사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3. 그 밖에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 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의 주요부실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간사(담당 주사)와 서기(담당) 각 1명을 둔다.

제20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결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신 설>

<신 설>

제11조 (생략)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
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14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구성)
- 안 제20조(수당 등)
-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까지 5년간으로 함.
-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나. 추계결과

- 세 출 (5,000천원/5년)

- 사무관리비

: 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 5명 × 2회 = 1,000천원

※ 기본료(2시간) 100,000원, 2시간 초과 50,000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지방세) : 5,000천원/5년

3. 작성자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20년)	2차 년도 (2021년)	3차 년도 (2022년)	4차 년도 (2023년)	5차 년도 (2024년)	계
세	입						
시	비						
세	출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재원 조달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의 존 재 원							
자 체 수 입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지방세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							
기타 (채무부담만자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

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별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별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별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별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별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별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한 별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별점관리기준에 따른다.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관련)

1. 용어의 뜻

"별점"이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표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별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별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별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별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별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별점의 합을 그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별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별점으로 한다.

나. 누계 평균별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별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별점을 부과한다.

4. 별점의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누계 평균별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계 평균별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누계 평균별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측정기관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별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점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별점을 책정할 수 있다.

라. 측정기관은 다목에 따라 별점 책정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직원이 해야 한다.

마. 측정기관은 라목에 따른 검토 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별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별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바.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점은 승계된다.

5. 별점의 측정기준

별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1.1	토공사의 부실 가)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기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을 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나)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1.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다)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1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3 1
1.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1.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나)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다)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3 2 1
1.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가 필	3

	<p>요한 경우</p> <p>나)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p>	1 또는 2
1.7	<p>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한 경우</p> <p>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p> <p>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p>	2 또는 3 1
1.8	<p>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p> <p>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p> <p>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p>	2 또는 3 1
1.9	<p>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p> <p>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p> <p>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p>	2 또는 3 1
1.10	<p>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p> <p>가)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p> <p>나)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p>	2 또는 3 1 또는 2
1.11	<p>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p> <p>가)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p> <p>나)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p>	2 또는 3 1 또는 2
1.12	<p>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p> <p>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p> <p>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p>	2 또는 3 1 또는 2
1.13	<p>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p> <p>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p> <p>나) 시험실·장비나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p> <p>다)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p>	3 2 1
1.14	<p>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p> <p>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p> <p>나) 건설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p> <p>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p>	3 2 1
1.15	<p>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p> <p>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나)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p>	2 또는 3 1 또는 2

	하지 않은 경우, 생산·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1.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나)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나)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
1.18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1.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나)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3 2 1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2.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2.3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나) 검사 후 부분 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3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나)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 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2
2.5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 가) 설계도서의 확인을 잘못하여 시공 후 주요 구조부 또는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소홀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나)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7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불철저 가)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불성실하게 하여 보완 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장비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였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다)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품질시험 중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2 1
2.8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가) 레미콘·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2 1
2.9	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가)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다)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10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	2 또는 3 1 또는 2
2.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입대·이민·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3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4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5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2 또는 3
2.16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부족하여 기술지도 등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 업무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2 1
2.17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 발생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3 1 또는 2
2.18	하도급 관리 소홀 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3 2 또는 3 1

다.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3.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다)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2 1
3.2	토질·기초조사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 2

	다) 경미한 설계 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1
3.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3 2 1
3.4	구조·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가) 주요 구조물의 전면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나) 주요 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3 2 1
3.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다)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3 2 1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적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설계내용이 빠진 경우	3 2 1
3.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을 초래한 경우로서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3
3.8	건설기술용역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1)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2)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1 또는 2
3.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건설기술 등 용역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기술용역업자만 해당한다) 1)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변경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변경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입대·이민·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진행 중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같은 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0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1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 소홀 가) 주요 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주요 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2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1)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	3

	성한 경우 2)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 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 또는 2
3.13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 해를 끼친 경우 가)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된 경우 나) 과실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된 경우 다)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2 1

6. 벌점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
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등을 공개한다.